

대한민국 장애인체육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 규정집 **규정**

[2024년 2월 28일 개정]

목 차

01.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규약	1
02. 가맹단체 운영 규정	17
03. 가맹 및 탈퇴 규정	31
04. 관리단체 운영 규정	39
05. 지회 운영 규정	45
06.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	53
07. 상벌위원회 운영 규정	59
08. 생활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67
09. 전문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73
10. 학교체육위원회 운영 규정	79
11. 선수위원회 운영 규정	83
12. 위원회 등 실비변상 규정	89
13. 체육유공자 포상금 지급 규정	93
14. 우수선수 훈련비 지급 규정	99

15. 대회개최 · 참가 보조금 지원 규정	109
16. 인사 규정	119
17. 복무 규정	143
18. 보수 규정	169
19. 회계 규정	197
20. 물품관리 규정	217
21. 여비 규정	237
22. 문서관리 규정	245
23. 직원 징계 및 소청 규정	255
24.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	293
25. 차량운영 관리 규정	327
26. 실업팀 운영 규정	347
27. 기부금품 관리 규정	365

실업팀 운영 규정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 실업팀 운영 규정

제정 2017. 07. 17.

개정 2019. 08. 12.

개정 2020. 07. 20.

개정 2020. 11. 19.

개정 2021. 11. 19.

개정 2022. 12. 13.

개정 2023. 10. 27.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 실업팀(이하 “실업팀”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지도·관리에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선수단”이란 실업팀에 두는 각 종목별 선수와 지도자를 포함한다.
2. “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의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로서 실업팀에 두는 각 선수단 감독과 코치를 말한다.

제2장 설치 및 구성

제3조(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장(이하“회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의 육성 및 저변확대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이하“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실업팀을 두되, 필요하면 증원 및 해체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0.>

제4조(구성) ① 실업팀은 단장, 총감독 및 지도자(감독·코치) 각 1인과 선수로 구성한다.

② 단장은 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으로 하고, 총감독은 경기운영팀장으로 하며, 지도자는 회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되, 각각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7. 20.>

1. 단 장 : 실업팀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
2. 총감독 : 단장의 지시를 받으며, 실업팀 운영에 관한 업무수행
3. 감 독 : 소속 선수의 관리총괄 <개정 2020. 11. 19.>
 - 가. 선수의 발굴·육성에 관한 사항
 - 나. 선수에 대한 훈련계획의 수립·시행

- 다. 선수의 경기대회 참가에 관한 사항
- 라. 단장 및 총감독에게 선수관리 상황의 보고 등
- 4. 코 치 : 감독 보좌 및 선수의 체력관리 및 훈련지도
- 5. 선 수 : 훈련 및 각종 경기대회 참가

제3장 자격과 임명

제5조(선수단 자격 요건 및 선발) ① 실업팀 지도자 및 선수는 전문체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장이 임명하되, 감독으로부터 추가 및 중도교체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임용 기준에 따라 단장이 결정할 수 있다. 단 공개채용이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체육회 인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 7. 20., 2021. 11. 19.>

② 지도자 및 선수의 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지도자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 규정의 자격을 갖춘 자중 해당종목의 올림픽, 세계선수권대회, 아시안게임, 아시아선수권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사람 또는 지도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23. 10. 27.>
2. 선수는 각종 국제대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등의 국내대회 상위입상자
3. 위 각호에 규정된 자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자
<신설 2023. 10. 27.>

제6조(선수단 등급 및 평가) ① 지도자는 2등급, 선수는 3등급으로 구분하고 등급책정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 ② 선수단의 평가 및 등급부여는 1년간의 경기성적을 고려하여 연말에 정하며, 신규 채용의 경우 별표 1에 따른다.
- ③ 채용기간 중 전국대회 또는 국제대회에서 3위 이상의 입상 실적이 없는 경우 직전 하위 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임용기간) ① 지도자 및 선수의 임용은 계약직으로 하고,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단, 연중 신규 임용의 경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지도자 및 선수의 계약 연장은 계약기간 만료 1달 전에 해야 한다.
- ③ 지도자 및 선수의 신규 임용 및 계약 연장을 위해서는 입단 신청서 및 입단 계약서(2부)를 작성한다.
- ④ 각종 경기대회 입상성적, 훈련태도 등을 평가하여 보수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구비서류) 지도자 및 선수를 영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단, 재계약 대상 선수 및 지도자는 경기실적증명서, 근로계약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개정 2019. 8. 12.>

1. 신청서 및 추천서 각 1부(별지 제1호 서식).
2. 근로계약서 1부.
3. 이력서 1부.
4. 최종학력증명서 1부.
5. 가족관계증명서 및 복지카드사본 각 1부.
6. 채용신체검사서(종합병원 발행) 1부.
7. 민간인 신원 진술서 1부.
8. 명함판사진 2매.
9. 경기지도자자격증 및 실적증명서(지도자) 각 1부.
10.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선수) 각 1부.

제4장 복 무

제9조(겸직금지) ① 선수단은 복무기간 동안 훈련에 전념해야 하며 다른 업무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21. 11. 19.>

② 지도자는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중앙경기단체 등으로부터 국가대표팀 등의 지도 및 훈련을 위해 파견을 요청받은 경우 회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60일 이내로 파견 근무를 할 수 있다. 단, 61일 이후부터는 무급휴가로 하되, 선수단 전체가 함께 훈련 파견을 받거나 후임 지도자로 대체가 가능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1. 19., 2023. 10. 27.>

제10조(복무시간) ① 직원의 근무시간에 준하며 훈련계획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② 원거리 거주 선수의 복무는 개별훈련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단장은 훈련계획서를 검토하고, 수시로 복무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무일 및 근무시간 외에도 훈련 및 대회에 출전하여야 한다.

제11조(휴무) ① 주말과 공휴일은 휴무로 하되, 훈련계획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② 지도자 및 선수의 연가, 공가, 병가 등 휴가는 장애인체육회 복무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 7. 20., 2021. 11. 19.>

③ 지도자 및 선수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장애인체육회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병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12., 2021. 11. 19.>

④ 지도자 및 선수의 특별휴가는 국제대회 또는 전국규모대회에서 3위 이상의 성적을 거두었을 경우 감독의 건의 및 단장의 결정으로 연간 7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으며, 경조사의 경우 장애인체육회 복무규정에 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0. 7. 20., 2021. 11. 19.>

제12조(이적) ① 실업팀에 선발된 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타 팀으로 이적을 원할 때에는 해당연봉의 1배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장애인체육회에 지불해야 한다. <개정 2020. 7. 20.>

② 이적 요청 시 최소 2개월 전에 이적동의서 등을 실업팀에 제출하고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타 팀으로 이적이 확정되면 장애인체육회에서 지급한 모든 것은 원형대로 반납해야 한다 (경기용 장비, 신분증 등). <개정 2020. 7. 20.>

④ 기타 이적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중앙경기단체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해임) 회장은 선수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계약기간이 끝나지 아니 하여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지도자 및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경우
2. 선수의 경기성적이 저조하여 향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훈련이나 경기를 게을리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
4.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이나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
5. 예산감축으로 선수단 감축 또는 해체가 불가피한 경우
6. 지도감독 부서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훈련장소를 무단이탈하는 경우
7. 그 밖에 효율적인 선수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장 보수 및 기타지원

제14조(보수 등) ① 보수는 별표 제1호에 의하여 지급하며, 연봉액의 1/12을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기타 수당 등에 대해서는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포상금) ① 실업팀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동기부여를 위하여 국제대회에 출전하여 입상한 경우 장애인체육회 포상금 지급규정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7. 20.>

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종목의 특성과 대회성격에 따라 차등 지급 할 수 있다.

③ 지도자의 경우에는 소속 선수 중 해당대회 최다금액 수혜자와 동일한 금액을 지원한다. (단, 국가대표 지도자로 출전할 경우)

제16조(격려금) 실업팀의 훈련 및 국내·외 대회 참가 시 선수단의 경기력을 높이고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격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출장여비) 선수단 운영의 원활한 업무수행 및 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장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8조(퇴직금) 회장은 지도자 및 선수에게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장 훈련 및 실업팀 선수단 지원

제19조(훈련) ① 지도자는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 매년 연초에 단장에게 보고하고 선수들의 개인별 훈련 상황과 경기력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② 월간 훈련계획 및 훈련 평가보고서는 종료 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지도자는 일일 훈련계획을 작성하고 훈련일지를 기록하여 선수관리를 하여야 한다.

④ 선수가 연고지를 달리하여 개별훈련을 할 경우 일일훈련계획서, 월간 훈련계획서 및 연간 훈련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⑤ 각 선수단이 각종대회와 국가대표 파견 및 강화훈련 등에 참가할 때에는 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단장은 훈련 중인 선수나 관련자들에게 중식제공을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대회 참가중이거나 휴식기간 중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0조(차량 및 유류비 지원) 회장은 실업팀 선수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차량 임차 및 유류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21조(합숙소의 정의) “합숙소”라 함은 장애인체육회 소속팀이 훈련에 전념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본회가 제공하는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20. 7. 20.>

제22조(사용허가) 합숙소의 사용은 소속팀이 입주함으로써 사용허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3조(사용책임) 합숙소를 사용하는 선수는 합숙소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함으로써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 및 시설의 훼손방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청결 유지

4.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 등 성실한 관리

제24조(사용허가의 취소) 회장은 다음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합숙소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자가 그 직위를 그만둘 때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두려고 할 때
3. 사용자가 선량한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합숙소의 정상적인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칠 때
4. 합숙소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을 때

제25조(합숙소 운영비의 부담) 합숙소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합숙소 운영에 따른 훈련보조비는 예산 범위 내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인수인계 등) ① 합숙소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때에는 사용자는 단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합숙소를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규정에 따라 합숙소를 인도할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합숙소 운영비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합숙소 담당 장애인 체육회 운영담당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20.>

1. 합숙소의 시설장비 및 물품 현황
2. 합숙소 운영비 정산 내역
3. 기타 필요한 사항

제27조(변상조치) 합숙소의 사용도중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합숙소용 비품(시설, 장비 및 물품을 포함)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변상책임을 진다.

제28조(준용규정) 선수단이 대회출전 또는 전지훈련을 갈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출장여비에 준하여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2017. 7. 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9. 8. 1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7. 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0.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 11. 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 12. 1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3. 10. 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제1호]

실업팀 등급 및 연봉 기준표

<개정 2020. 11. 19., 2022. 12. 13., 2023. 10. 27.>

구분	등급	연봉(천원)	책정기준	비고
감독	1등급	30,000~6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대표 5년 이상의 지도경력 및 선수경력 ○ 삭제 <2023. 10. 27.>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1급 자격증 소지자 ○ 해당종목 특기자로 체육석사이상 학위자로 2년 이상 지도경력 및 본회에서 인정하는 자 	
	2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대표 3년 이상의 지도경력 및 선수경력 ○ 삭제 <2023. 10. 27.>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증 소지자 ○ 국가대표 지도경력 2년 이상 	
코치	1등급	26,000~5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2023. 10. 27.>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증 소지자 ○ 국가대표 지도경력 2년 이상 및 본회가 인정하는 자 	
	2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삭제 <2023. 10. 27.> ○ 장애인스포츠지도사 2급 자격증 소지자 ○ 국가대표 지도경력이 있는 자 및 본회가 인정하는 자 ○ 전국체전 등에 출전하여 입상한 선수 및 지도경력이 있는 자 	
선수	1등급	25,000~60,000	○ 올림픽 또는 세계선수권대회 입상자 (4년 이내)	
	2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시안게임 입상자(4년 이내)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2관왕 이상 고득점자 	
	3등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대표 경력 2년 이상 ○ 전국체전 등 전국대회 입상경력 자 ○ 경기력 향상을 위해 특별 영입이 필요한 자 	

※ 등급별 연봉 책정기준은 예산 범위 내에서 매년 변동 될 수 있음.

장애인체육회 실업팀 입단 신청서

성 명		주민번호	
종 목		연 락 처	(HP)
			메일
장애유형		스포츠등급	
최종학력		전 소속	
본 적			
현 주소			

상기 본인은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실업팀 소속으로 입단을 희망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체육회 실업팀 관리규정을 충실히 준수 할 것이며, 특히 아래 사항을 위반 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계약파기 조치(퇴출)등에도 이의 없음을 서약합니다.

- 아 래 -

1. 정당한 사유 없이 지시 또는 운영지침을 위반할 경우
2. 체육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경우
3. 훈련 및 대회출전에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
4. 월 3일 이상 훈련 불참하거나 무단(조퇴)지각이 주 3회인 경우
5. 전국장애인체전을 비롯한 전국규모대회에서 성적이 부진할 경우

20 년 월 일

- 첨 부 : 1. 입단(서약)신청서 1부. 5. 채용신체검사서 1부.
 2. 입단(연봉)계약서 1부. 6. 이적동의서 1부(경력).
 3. 이력서 1부. 7. 민간인 신원진술서 1부.
 4. 실적증명서 1부.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입 단 계 약 서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장(이하 “갑” 이라 칭함)과 계약당사자(이하 “을” 이라 칭함)는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의 실업팀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상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의 증명을 위해 본 계약서를 작성, 기명날인 하여 상호 1부씩 보관 한다.

제1조(지원당사자)

(갑) :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을) : _____ 인

제2조(지원기간)

1. 20____년 01월 01일부터 20____년 12월 31일까지
2. “을” 은 차기년도 이적할 의사가 있을 경우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종료 후 1개월 안에 이적 의사를 통보하여야 하며, “갑” 은 차기년도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기간만료 1개월 전에 서면 또는 구두 통보한다.(※ 선수는 지도자가 통보)
3. 계약종료 후에는 지체 없이 이적동의서를 발급한다.

제3조(직 책) “을” 은 세종특별자치시장애인체육회 소속 지도자(선수)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

1. 지원액 : _____ 원 × 12개월
2. 내역 : 월보수는 12개월(1월~12월) 지급하고 퇴직금(____천원)은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으로 적립한다.
3. 차기년도 잔류시 계약은 성적 및 예산 범위에서 협의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제5조(지급방법)

1. 월 보수일은 20____년 0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다.
2. 월 보수일은 매월 25일에 지급한다.

제6조(퇴직금 및 보험급여)

1. 퇴직금은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으로 적립하여 퇴직시 금융기관에서 개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다만, 퇴직금 지급은 1년 이상 재직한자에 한함)

[별지 제4호 서식]

연간 훈련 및 출전 계획서

구 분	훈 련 목 표	중점사항(대회출전 등)	비 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별지 제5호 서식]

(월) 운영계획서

결	담 당	팀 장	사무처장
재			

종 목		훈련인원	
훈련기간		훈련장소	
훈련목표			
중점사항			

전지훈련 계 획 (있음/없음)	기 간		장 소	
	목 적			

대회참가 계 획 (있음/없음)	대 회 명			
	참가종목			
	기 간		장 소	
	예상성적			

기 타 요청사항				
----------------	--	--	--	--

작 성 일		작 성 자	직 위 :	성 명 :	(인)
-------	--	-------	-------	-------	-----

세종특별자치시장장애인체육회장 귀하

